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(2025년 2차)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「인천 기초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」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 개요

- □ 사업목적 : 인천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(기초수준)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
- □ 지원대상 : 인천 소재* 중소·중견 제조기업 15개사 내외 *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(본사 소재지와 무관)
- □ 지원내용: 제품설계·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, 5G, 빅데이터, AR·VR, AI,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지원 (제조 데이터 수집· 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)

o 지원유형

구 분	솔루션 종류	사업비 조건 (총사업비 기준)	비고
설비 도입형	기 구축 SF와 연동하는 설비	H/W 80% 이하	1회 참여 한정
시스템 구축형	MES, SCM 등 정보화 솔루션	H/W 60% 이하	-
데이터 기반형	ERP, QMS 등 네트워크/제어 솔루션	S/W 60% 이상	-
특수목적형	FEMS, PLM 등 지능화 서비스 솔루션	H/W 60% 이하	-

^{*} 유형별 선정기업 수 제한 없음(선정 후 참여기업에 대한 유형별 사업관리 예정)

○ 지원범위 : 스마트공장 구축비용(총 사업비)의 50%,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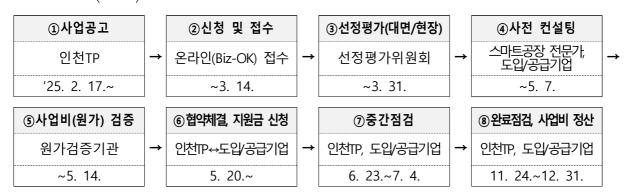
지원유형	구축수준 ¹⁾	인천시 지원금(기업당, 최대) ²⁾	지원규모	협약기간 ³⁾
스마트공장 구축	기초	5천만원(총 사업비의 50%)	15개사 내외	협약일로부터 약 7개월

1)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(솔루션) 도입에 한하여 인정

예시.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(기초수준)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(기초수준)를 신청하는 경우 ☞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(기초수준)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(기초수준)를 신청하는 경우 ☞ 인정

- ²⁾ 사전 컨설팅,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(단, 부가가치세, 보증증권 발급/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)
- 3)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,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

□ 추진절차(계획)



2. 참여기업 모집

□ 공고 및 접수

- 공고/접수기간 : 2025년 2월 17일(월) ~ 3월 14일(금), 18:00 한
- 공고방법 :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, 비즈오케이(Biz-OK) 사이트 등
- 접수방법 : 비즈오케이(bizok.incheon.go.kr) 온라인 접수
- 접수서류
 - 1. 사업신청서(서식①), 개인(기업)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서식①-1)
 - * '서식①-1'은 도입기업, 공급기업 각 1부 작성
 - 2. 사업계획서(서식②), 참여 공급기업 현황(서식②-1)
 - 3.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, 공장등록증, 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**, 중/소/중견 기업 확인서 **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 - 4. 도입기업의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
 - * 주석 및 부속명세서 생략 가능
 - " 구역 및 구극경제시 경력 기증

□ 참여자격

- 도입기업 :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*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- *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(본사 소재지와 무관)
 - ※ 참여 제외대상 (공고일 기준)
 - ·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
 - ·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- · 휴.폐업 중인 기업
 - ·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
 - ·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(선정평가위원회 판단)
 - ·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
 - ·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(선정평가위원회 판단)
 - ·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
- 공급기업 : 공고일 기준,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'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*하여 매칭한 기업
 - * 운영기관(인천TP)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

3. 주요 사업내용

□ 추진절차

추진절차	추진주체	세부 수행내용
신청(서) 접수 및 요건검토	인천TP, 도입기업	○ (공고/접수) 인천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사업공고, 비즈오케이(bizok.incheon.go.kr) 온라인 접수 ○ (요건검토)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, 요건검토 결과 통보,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
선정평가	인천TP	○ (대면평가) 평가위원회 구성,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(서) 타당성/적정성 심사 ○ (현장평가) 현장실사를 통한 참여자격 적격 여부 판단
사전 컨설팅 (전문가 진단)	인천TP, 도입/공급기업	 선정 도입기업별 전문가 매칭 및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보완 사전 수준진단 2회, 요소별 세부진단 3회, 개선방안 도출 5회 등 10회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 완료
사업비 검증	인천TP	○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증 ○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(인천TP 별도지정) 외주를 통한 객관성 확보
♥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	인천TP, 도입/공급기업	○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(5월 30일 한 완료) ○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급 선지급 (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)

추진절차	추진주체	세부 수행내용
중간점검	인천TP	○ 사전 컨설팅 매칭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○ 중간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
1		
완료점검	인천TP	○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(점검위원)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○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○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(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증)
1		
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	인천TP, 도입기업	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('성공', '보완, '실패') ○ '실패'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아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

^{*}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평가

- ① 요건검토 : 결격사유 확인(제조혁신센터)
 -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진위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확인
- ② 대면평가 : 사업계획(서)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
 -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기업 고득점순 선정

※ 평가항목

구 분	평가항목	배 점
도입기업 역량 (30)	∘ 상시 종업원 수, 매출액, 수출액(해당되는경우), 영업이익,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?	10
	∘도입기업의 현재 모습(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)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∘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(도입)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?	10
구축 필요성 (30)	· 스마트공장 구축 "주요 내용"의 범위가 명확하고, "목표수준"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?	10
	· 수행하고자 하는 "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"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, "목표수준" 달성에 적합한가?	10
	∘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? (구축목표 – 구축내용 -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, 기존수치/목표수치의 근거제시, 지표 계산식 제시,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)	10
지원 적정성 (40)	∘ "데이터집계 포인트"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(자동, 반자동, 수동)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?	10
	∘ "솔루션 기능 구성도"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?	10
	∘ "추진조직 및 업무분장"과 "지원계획" 등에서 도입기업/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?	10

구 분	평가항목	
지원 적정성 (40)	∘ "추진일정 총괄표"와 "산출물 예정 목록"간의 단계가 일치하며, "산출물 예정 목록"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?	
	∘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(기술력) 및 투입인력(개발PM 등)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?	5
가점 · 인천광역시 우수기업(중견성장사다리기업, 비전기업, 유망중소기업) (2) 선정기업 *공고일 기준,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		2
<u></u> 합계		

- ③ 현장확인 : 사업계획(서) 및 사업장(현장) 대조 확인
 - 참여자격 '적격' 여부 판단
 - 참여자격 '부적격' 기업을 제외하고, 대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1배수 (지원사업비 기준)의 참여기업 및 5개사 이내의 후보기업 선발

※ 평가항목

확인 항목		확인 여부
사업계획 및 사업장 대조·평가	· 사업계획의 적절성	적합/부적합
	∘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	적합/부적합
	· 시스템 활용 제고방안	적합/부적합
	∘ 기 구축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 수준	적합/부적합/해당없음
참여자격 적격 여부		적격/부적격

□ 사전 컨설팅

- 도입기업별 관련분야 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 : 도입기업 선택
 -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전문가 POOL 'DX평가(멘토)단' 활용
- 스마트공장 사업계획(서) 사전 컨설팅* : 스마트공장 전문가→도입기업
 - 도입기업 선정통보(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)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회 이행
 - 사업장의 스마트화 수준 진단,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점검
 -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(서) 검토 및 보완
 - * 전문가 수당(회당 300천원)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

□ 원가계산

-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 및 산출기초 투명성 확보
 - 지원유형별 총사업비 대비 H/W 비용(H/W 구입비 + N/W 구축비), 또는 S/W 비용(S/W 개발비 + S/W 구입비)의 적절성
 - 대가산정방식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정)에 의한 적정 S/W 개발비 산정
 - 도입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 등 현물출연 불인정

-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
 -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 협력(인천TP 지정) 및 증빙자료 외주 검증
 -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및 사업계획(서) 보완
- □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
 - 인천TP-도입기업-공급기업 3자간 협약체결
 -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, 사업비 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협약체결 이행
 - * 기한 내 협약 미체결시 선정기업 자격 취소 및 후순위 후보기업 대체
 - 사업비 지원금 선지급 (인천TP→도입기업)
 -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 인천시 지원금을 사업 전용 금융계좌로 지급
- □ 점검 및 최종평가
 - 중간점검
 -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,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사항에 대해 도입/ 공급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
 - 중간점검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점검일로부터 2주 이내 시정 조치
 - 중간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중단 의견 또는 기한 내 보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
 -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
 - 협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,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도입 /공급기업이 확인(날인)한 완료보고서와 제반 서류(단계별 산출물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납품검수 확인서 포함) 제출
 - 도입기업은 사업비(예산) 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,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준수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을 뒷받침하는 지출증빙 및 회계기록의 검토 결과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(서)*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
 - * 개인 회계사 사업자 제외,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
 -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보호 의무에 따라 결과물 일체를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관리하고 해당 증빙*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
 - * 기술임치 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
 -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도입(설치 또는 개발)한 S/W, H/W, N/W, 기타

설비 등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확약받은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

- 완료점검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점검일로부터 2주 이내 시정 조치
- 완료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실패 의견 또는 기한 내 보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
- 완료점검 결과('적정' 또는 '보완' 완료시)를 토대로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'성공', '보완', '실패'로 최종 평가(판정)하고 '실패' 판정시 도입기업으로부터 사업비 환수,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

□ 기타사항

- 선정평가 결과, 사업비 여건 등에 따라 지원(선정)기업 수를 포함한 사업내용은 변경 가능
-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
 - 1.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,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
 - 2. 협약 이후,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
 - 3.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
 - 4.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/분석 (도입기업 참여 필수)
-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'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'(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2024. 6.)을 준용

4. 문의처

운영기관	주무부서	유선전화	전자메일
 인천테크노파크	제조혁신센터	032) 260-0621	dawnfog6@itp.or.kr